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4. 19 선고 2024가단24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4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5,200,000원 및 2024. 1. 1.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7. 7. 12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,000,000원, 차임 월 65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,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. 피고가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래 각 청구를 한다.가.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.

나. 2023. 5. 1.부터 2023. 12. 31.까지 연체한 차임 5,200,000원 및 2024. 1. 1.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

판사 염원섭

별지